

공증협회 주요 소식



법무부 주요 지침

❶ 이자제한법 시행 관련 업무 (2008. 1. 7.)

- ☞ 공증인법 제25조에 의해 공증인은 법령에 위반한 사항과 무효인 법률행위에 관하여 증서를 작성할 수 없는 바, 2007년 3월 29일 제정된 이자제한법 및 동법 시행령(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의해 2007년 6월 30일부터 이자제한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를 제외하고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고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이므로, 연 이자 30퍼센트를 초과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대한 공정증서 작성(공증인법 제25조) 및 사서증서 인증(공증인법 제59조)을 할 수 없음.
- ☞ 다만, 위 법의 시행 이후에는 위 법의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약정은 최고이자율의 한도에서 유효하고, 이미 작성된 초과 약정에 대한 공정증서 및 이에 대한 집행문도 위 최고이자율의 한도에서 유효하므로,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약정에 대한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집행문 부여 신청이 있을 경우 위 법 시행

이전에는 원래의 약정이율에 따른 원리금, 위 법 시행 이후에는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약정이율에 따른 원리금을 합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명기하여 집행문을 부여해야 할 것임.

❷ 법무법인의 공증담당 변호사 서명 등 신고 관련 업무(2008. 2. 20.)

- ☞ 공증인법 제20조에 의해 공증인은 그 직무를 행하기 전에 서명과 직인의 인영을 소속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변호사법 제49조제1항에 의해 법무법인의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는 구성원 중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가 주사무소에서만 행할 수 있음.
 - ☞ 최근 공증사무소에 대한 공증서류검열 결과, 일부 법무법인에서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고 법조경력 5년 미만인 자가 공증인 서명, 직인 신고 후 공증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적발되었는 바, 이는 부적격자에 의한 공증업무 수행으로 공증의 효력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법령위반이므로 향후 공증서류의 효력 상실 및 분쟁발생 방지 등을 위해 주의바람.
- ※ 위 개정 변호사법은 2005년 1월 27일 공

포, 2005년 7월 28일 시행되었는 바, 부칙 제5조(법무법인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에 대한 경과조치)에 의해 위 법 시행 전에 법무법인에서 공증인의 직무를 행하는 변호사로서 공증인 서명, 직인 신고를 한 자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음(다만, 그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법무법인으로 전직한 경우에는 동 규정의 적용을 받음).

❶ 2007년도 공증서류 검열시 주요 지적 사항(2008. 5. 27.)

1. 공증사무소에 공증인 부재(공증인법시행령 제8조)
2. 부적격자에 의한 공증업무 수행(변호사법 제49조)
 - 공증인가 법무법인에서 법조경력 5년 미만인 변호사나 분사무소 구성원에 의한 공증업무 수행
 - 분사무소에서 공증업무 수행
 - ※ 법무법인의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는 구성원 중 통산하여 5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에 있던 자가 주사무소에서만 행할 수 있음.
3. 공증인이 미리 서명한 말미용지 비치(공증인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명령 및 직무상 의무 위반)
 - ※ 2005. 8. 29. 공증업무 관련 지시
4. 법령에 위반한 사항, 무효인 법률행위, 무능력으로 인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한 공증(공증인법 제25조)
 - 이자제한법 위반 사항 공증 등
 - ※ 이자제한법의 제정·시행으로 2007년 6월 30일 이후 동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고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할 수 없고, 설정 차용일이 2007년 6월 29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6월 30일 이후의 이자는 연 30%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으로 2007년 10월 4일 이후에는 대부업체에서 받을 수 있는 연 최고 이자율도 49%로 제한됨(촉탁인이 이자제한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체 또는 대부업체인 경우에는 등록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받으시기 바람).

※ 위 사항은 공정증서 작성뿐만 아니라 사서증서 인증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의 지연손해금도 이자와 별도로 위 이자율을 초과하여 공증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람.

5. 공증인 제척사유 해당됨에도 공증(공증인법 제21조)
 - 법무법인의 공증담당변호사의 촉탁으로 다른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을 하는 경우 등
6. 공증인이 촉탁(대리)인을 대면하지 않고 공증(공증인법 제38조, 제57조, 제63조제2항, 제66조의2제3항)
 - 공증인 부재중에 공증보조자에 의한 공증
 - 촉탁(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증
 - 공증인이 촉탁(대리)인을 대면하지 않고, 공증보조자가 작성한 서류에 서명 날인만 하는 경우
7. 공증인 보조자 미신고, 서약서 미징구(공증인법 제23조,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
 - ※ 공증인이 보조자를 교체 또는 해고하거나 보조자가 사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지 방검찰청에 신고해야 함.
8. 공증인 서명이 신고서명과 다르거나, 쉽게 읽을 수 없음(사무관리규정 제3제8호)

9. 공증인 서명, 날인, 간인 누락, 공증인 서명 부분을 기명 또는 사본 처리(공증인법 제38조제3항 및 제5항, 제59조)

10. 촉탁서 부실 기재(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 제12조제1항)

- 촉탁서 미첨부
- 촉탁서에 법률행위의 목적가액과 수수료 미기재
- 촉탁서에 공증인 확인 서명 누락 등

11. 촉탁인(혹은 대리인) 서명 누락, 서명 부분을 대필하거나 기명 또는 사본 처리, 촉탁인 확인 미흡(공증인법 제27조, 38조제3항, 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 제33조제1항)

- 공증보조자에 의한 대필(특히 캐피탈이나 상호저축은행 등 한 번에 수건을 촉탁하는 경우)
- 공증서류에 촉탁인 신분증 미첨부 등

※ 번역 인증서 서약자로부터 기명 날인이 아닌 서명 날인을 받을 것.

12. 공정증서 문자 삽입, 삭제 방법 미준수(공증인법 제37조)

- 칼로 긁거나 화이트(수정액)를 이용한 수정
- 공정증서 문자 삽입 또는 삭제 후 공증인 또는 촉탁(대리)인과 참여인의 날인 누락

※ 공증사무소 보관 장부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에도 위 법령을 준용하고, 수정 후 공증인이 날인할 것.

13. 사서증서 수정사실 인증문에 미기재(공증인법 제57조제3항)

14. 외국어 문서 인증서 번역문 미첨부(공증인법 제25조, 제26조제1항, 제59조)

15. 첨부서류 확인 미흡(공증서식사용등에관

한규칙 제14조제1항, 제29조제2항)

- 위임장에 위임내용, 위임일 등 미기재
- 위임인 기명
- 의결정족수 미달됨에도 의사록 인증
- 주주명부 기재사항 누락 등

16. 인감증명서 유효기간(6개월) 도과(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 제14조제3항)

17. 대리 촉탁에 의한 공정증서 작성시 통지 관련 규정 위반(공증인법시행령 제13조제1항, 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 제17조)

- 기간(3일) 도과 통지
- 등기우편물 발송증명서 미첨부
- 증서원부 비고란에 통지의 요지방법 연월일 미기재

※ 일자 계산시 초일은 불산입하고 3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통지하면 되나, 1·2일째 되는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라 하더라도 일자 계산시 산입됨에 유의.

18. 신청서 부실 기재, 신청인 또는 공증인 서명 누락(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 제18조제1항)

- 집행문 제도 부여 또는 수통 부여시 사용증명원 등 증빙자료 미첨부 등

19. 집행문 부여 관련 규정 위반(공증인법 제56조의3제1항, 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 제19조제2항)

- 공정증서 작성 후 7일내 집행문 부여
 - ※ 공정증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7일을 경과하지 아니하면 집행문을 부여할 수 없고, 기간 계산에 있어서 초일은 불산입하므로, 예컨대 2008년 1월 1일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2008년 1월 9일부터 집행문 부여 가능.
- 공정증서 원본에 집행문 부여취지 미

기재

- 집행문 부여취지 기재 후 공증인 서명 또는 날인 누락

20. 임의 서식 사용, 서식 혼동 사용(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 제2조, 제3조)

- 임의로 개조한 서식 사용
- 사서증서 인증시 인증문 서식은 면전 인증(별지 제34호서식)과 자인인증(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다름에도 혼용

- 유언공정증서 작성시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날인하는 같은 면에 공증인이 서명 날인(별지 제29-3호 서식)해야 함에도 별지 제12호서식 사용 서명 등

21. 각종 장부 미비치, 부실기재, 확정일자부제인 불명 등(공증인법시행령 제18조, 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 제9조, 제22조)

- 공증서류검열부 미비치
- 공정증서 및 인증서 등 표지 미첨부
- 계산서 비고란에 증서 또는 등부 번호 미기재
- 공정증서 표지에 원본 표기 누락, 법률행위의 내용에 관한 명칭 표시 등
- ※ 연도가 바뀌면 소급기재 방지 등을 위해 마감 조치할 것.

22. 공증서류 및 장부 보존 관련 규정 위반 등(공증인서류보존규칙 제3조, 제4조)

- 비인가 시설에 공증서류 및 장부 보존, 사무실내 기록 방지
- 창고정리 미흡, 기록미편철 등

23. 공증수수료 감액(일명 ‘덤핑’), 공증수수료 계산 오류(공증수수료 규칙)

- 초청장 인증 수수료는 5명까지 12,500원, 위임장 인증 수수료는 5,000원임

에도 각 25,000원과 10,000원을 받음

- 법률행위의 목적가액이 산정이 가능함에도 산정 불능시 수수료 계산 등

24. 공증서류검열시 지적사항 미시정(공증인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명령 위반)

㉠ “공증인의 촉탁(대리)인 대면” 관련 지시사항(2008. 6. 5.)

☞ 공증업무는 분쟁의 사전 예방 및 사후 신속구제 등을 위한 국가사무로서 그 핵심은 ‘촉탁(대리)인 신분 확인’ 및 ‘공증인의 촉탁(대리)인 대면’으로 공증인법 등 관련 법률이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하면 공증의 효력 여부 나아가서는 국가사무의 신인도까지 문제가 될 수가 있음.

☞ 공증인법 제38조(증서작성절차) 제1항에 의해 공증인은 그가 작성한 증서를 열석자에게 읽어 주거나 또는 열람시켜 촉탁인 또는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 그 취지를 증서에 기재해야 하고, 공증인법 제57조(인증방법) 제1항에 의해 사서증서의 인증은 당사자로 하여금 공증인의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거나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본인이나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한 후 그 사실을 증서에 기재함으로써 행하게 되어 있으며, 정관인증(공증인법 제63조 제2항) 및 의사록인증(공증인법 제66조의2제3항)시에도 공증인은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을 대면하게 되어 있음.

☞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증사무소에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공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는 공증인법

에 위반됨은 물론 공증제도의 취지에 어긋나고, 공증의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입히는 행위로 공증 관련 분쟁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이 되므로, 법무부에서는 향후 아래와 같이 공증인이 촉탁(대리)인을 대면하지 않고 공증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적발되는 경우에는 공증인 징계, 공증사무소 설치인가 취소, 법무법인 설립인가 취소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니 각 공증사무소에서는 이 점을 염두하고 공증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람.

- 아 래 -

- ① 공증인(또는 공증담당변호사) 부재중에 공증보조자에 의한 공증업무 수행,
- ② 촉탁(대리)인이 공증사무소에 출석하지 않고, 공증보조자 등 다른 사람을 통해 공증서류를 전달, 작성하는 사례,
- ③ 공증보조자가 작성한 공증서류에 공증인(또는 공증담당변호사)이 촉탁인을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명 날인만 하는 사례.

❶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관련 지시사항(2008. 9. 30.)

- ☞ 2008년 8월 22일부터 시행된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공증서식 사용등에관한규칙 서식 중 보증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제25-2호 서식) 제8조,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제26-2호 서식) 제8조, 협의이혼계약공정증서(제30호 서

식) 제7조, 사용신고서식 중 채권양수도 부금전소비대차계약 서식 제8조, 대출금 상환계약 서식 제6조의 문구를 다음과 같이 같이 수정하여 사용함.

□ 다 음 □

- ①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 ②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금
***** 원이다.”

❶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 관련 업무 추가 지침(2008. 10. 8.)

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보증인 보호법’이라 함) 제4조 보증채무의 최고액에 포함되는 채무의 범위.

☞ 보증인보호법 보증채무의 최고액의 보증채무에는 주채무에 종속한 보증채무의 모든 범위가 포함되는 것임. 주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지연기간의 제한 없이 위 최고액에 포함되지만,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위 최고액의 제한을 받지 않고 지연기간에 따라 발생함.

2. 대리촉탁의 위임장에 보증채무 최고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보증인이 보증채무 최고액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인지 여부.

☞ 보증인보호법에 의할 때 보증의사는 보

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함(보증인보호법 제3조 제1항, 제4조).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위임장으로 보증의사와 위임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임장에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표시될 것을 요하지는 않음. 다만, 보증인이 실제로 위임한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초과하여 보증이 이루어짐으로써 사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인을 상대로 보증채무 최고액을 확인하여 그 범위 내에서 공증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3. 보증인보호법 제7조의 약정 보증기간이 있을 경우 공정증서의 기재 방법.

- ☞ 보증인보호법 제7조의 약정 보증기간이 있을 경우 서식규칙 별지 양식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공증인법 제3조).

제□조(연대보증) ①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보증인의 보증채무 최고액은 금 _____원이다.

③ 보증기간은 _____년으로 한다.

4. 공증서식사용등에관한규칙(이하 ‘규칙’이라 함)별지 제27-1, 2, 3호 양도담보부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 양식과 같이

보증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서식의 경우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여부. 가능하다면 그 방법.

- ☞ 서식규칙 별지 양식에 보증인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위 3항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함으로써 공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5. 기타 보증인보호법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증업무의 처리 지침은 어떠한 사항이 있는지.

- ☞ 보증인보호법은 보증채무의 범위를 특정하고, 보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적 채권추심행위를 금지하며, 금융기관과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채무자의 신용에 대한 정보를 보증인이 제공받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금전거래를 확립하려고 하는 것으로 위 법의 취지와 내용에 부합하도록 공증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임.

법률 개정안 의견 제시

●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한 상법 및 공증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제시

법무부가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상법상 정관 및 의사록 인증 면제를 골자로 상법 및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는 2008년 5월 21일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 다 음 □

1. 서언

- 정관인증제도는 상법 제정 당시부터 존속해 온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이며 그 간 효용이 충분히 입증된 제도로 선불리 폐지할 수 없다. 법인설립온라인(원스톱)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전자공증제도의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다.
- 원시정관과 창립총회 등의 의사록에 대한 공증을 생략하면 무분별한 회사설립의 남발로 이어질 것이며 일시적인 설립의 편의를 위하여 법적 안정성을 포기하는 것이 된다. 설립의 편의는 공증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2. 원시 정관의 중요성

- 회사의 원시정관은 설립당시 회사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절한 결

과물로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근본규범으로 가장 중요한 회사의 자치법규이고, 향후 회사 및 회사를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의 분쟁해결의 기준이 된다. 정관 규정은 주주와 회사 경영자는 물론 회사의 채권자와 같이 회사와 거래한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내용이 상법에 맞고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정관의 내용을 적법하고 명확히 하지 않으면 향후 불순한 대주주나 경영자들에 의하여 내용이 변경되거나 은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분쟁의 원인이 된다. 또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없어져 무익한 분쟁을 양산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회사의 존립조차 위태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 창립총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회사설립 과정의 조사 및 보고이다. 설립과정에 대한 조사는 법규를 준수하지 않거나 회사제도의 악용한 부실회사의 설립을 막는 최소한의 절차이다. 주식회사 제도의 악용이나 부실회사의 설립을 방지하면 결국 부실한 회사와 거래한 선량한 상대방이 그로 인한 손해를 떠안게 되고, 결국 이러한 부담은 종국적으로 주식회사 제도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릴 것이다.

3. 정관에 대한 공증의 필요성

- 원시정관과 창립총회의사록에 대한 공증은 위와 같이 회사의 근본규범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회사제도의 악용이나 부실회사의 설립을 견제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이다. 원시정관과

창립총회 의사록에 대한 공증제도를 폐지한다면 회사의 설립을 간소화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지 모르나 회사를 둘러싼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은 현저하게 후퇴하게 될 것이고, 그 부담을 결국 국민 전체가 떠안아야 할 것이다.

- 실제로 이러한 공증에 과다한 시간이나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다. 공증수수료는 정관인증의 경우 발행주식액면총액 5,000만원까지는 8만원, 5천만원 초과시 초과액의 2천분의 1을 더하되 상한액은 100만원(발행주식액면총액 10억원의 경우 55만 5천원)이며, 의사록 인증의 경우 건당 3만원이며, 의뢰인은 대부분 법무사 사무실에서 초안을 작성하여 오기 때문에 공증사무소에서의 검토 및 공증과정도 1시간을 넘지 않는다.
- 따라서 회사 설립 절차의 간소화 명분으로 원시정관과 창립총회의사록 등에 대한 공증을 생략한다는 것은 그 편의성의 증진 효과가 별로 크지도 아니한 것에 대하여 법적 안정성을 포기한다는 것으로서 그 결과는 사회적으로 막대한 분쟁해결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는 경제학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
- 온라인 상에서의 회사 설립 절차는 선진국과 같이 전자공증 등 선진적 공증제도를 구축하면 해결될 수 있고 이미 이러한 제도가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다.

4. 표준 정관이나 표준의사록은 절차의 간소화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주식회사의 형식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법인은 외형이 유사하더라도 사업의 영역이나 방법에서는 동일한 법인이 있을 수 없고, 그 내부사정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내용의 정관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창립총회 등의 의사진행 중에 토의 및 결의되는 안건의 종류나 내용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 가사 표준정관이나 의사록 양식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내용이 수시로 개정될 것이다. 표준정관이나 의사록을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권장 내지 예시로서 가치가 있지만 그 이상을 넘어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개별 회사마다 사정에 맞게 수정하여야 할 것이다.
- 하나의 표준 정관으로는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법인설립 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여 법인설립을 하는 것을 가로막는 큰 요인이 될 것이다. 아무리 표준정관에 의거하여 정관을 작성한다 하여도 결국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법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법인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자치법규로서 정관의 내용을 확정하는데 많은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
- 한편 현재 우리나라 소규모 법인기업의 대부분 주식회사 형태인데 이들 회사들은 정관,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을 사후에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서 정관인증이나 창립총회의사록을 포함한 의사록의 인증제도마저 폐지된다면 법인을 둘러싸고 분쟁의 증가에 따라 많은 사회적인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다.

- 더구나 창립총회 의사록에는 이사와 감사로 누구를 선임했는지 하는 부분은 회사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서 표준 의사록은 의미가 없고, 공증하지 않은 의사록을 제출하여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서는 그 의사록이 정부에서 정한 표준의사록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이다. 이는 결국 종래 공증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던 실질적 심사부담이 법인등기소 직원들에게 전이되는 결과가 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상당한 지체가 예상되고 이것은 도리어 법인 설립의 지연을 가져오고 말 것이다.

5.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발기설립은 법인설립온라인(원스톱) 시스템 구축이 부적합하다.

-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주식을 전부 인수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방법이다. 현행 상법에 의하면 발기인 수는 1인이자도 무방하다. 발기설립의 경우에도 변태설립사항이 있으면 모집설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관에 기재되어야 효력이 있고 그 사항에 관하여 검사인의 조사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발기설립이라도 변태설립사항이 존재하면 온라인시스템에 의하여 모두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부

적합하다.

6. 현실

- 현재 우리나라 법인의 98% 이상이 10억원 미만의 자본금으로 설립되고 있다. 대부분의 회사가 우선은 소액 자본금으로 시작하고 사업의 확장에 따라 증자를 하는 것이다. 또한 자본금은 10억 미만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자산규모나 영업은 상당히 큰 기업들이 매우 많으며 결코 이들 회사를 소규모 회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 오히려 사회적으로 가장 분규가 많고 회사법적 규율이 취약한 분야가 바로 이러한 규모의 회사들이다. 따라서 자본금 금액을 기준으로 상법의 예외를 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굳이 강행한다면 자본금 5000만원 이하의 회사들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 법인 설립을 위한 온라인(원스톱)시스템이라고 하여 반드시 정관인증이나 의사록인증제도를 폐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 일본도 온라인 등기를 하면서도 정관인증은 유지하고 있다.

7. 입법예

- 일본과 독일도 회사법상 설립과정에 있어 정관의 공증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절차가 용이하다고 하나 실제로는 회사 설립과정에 있어 거의 100% 법률전문가인 변호사가 주관하여 행한다.
- 정관(Articles of Incorporation)의 적법성은 이를 서류가 변호사에 의하여 작성되고 주 당국에의 접수절차도 변호

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실상 법률 전문가들에 의하여 담보되며 허위 서류 작성시 우리나라와는 비교되지도 아니할 정도로 엄중하게 형사 처벌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회사설립절차에 있어 법률전문가가 관여하는 것은 정관과 의사록 공증절차 외에는 없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여 미국 제도와 비교하여야 할 것이다.

❶ 우윤근 의원 발의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회 의견서 법무부 제출

민주당 우윤근 국회의원이 공증인의 직무에 관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공증인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협회는 2008년 9월 12일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하였다.

□ 다 음 □

1. 요지

- 국가배상법이나 형법상 뇌물죄 등에서 공증인은 공무원으로 해석되고 있는바, 그 이유는 공증인이 취급하는 공증업무가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의 공권력 행사이고, 공증인은 법령에 따라 공무에 종사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은 변호사법에 의하여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석됩니다. 또한 형법상 업무상비밀누설죄는 공증인과 변호사를 동일한 범죄의 주체

로 규정하고 있고,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의 경우 공증업무와 관련된 감독 및 징계에도 공증인법을 준용하고 있어서 차이가 없습니다.

- 따라서 새삼스럽게 공증인법 제2조 후단을 개정안과 같이 추가하는 것은 부작용만 낳을 뿐입니다.

2. 현행법상 차이가 있는지

(1) 국가배상법의 적용

- 국가배상법의 해석상, 공증인은 공증인법 제2조, 제10조, 제11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 국가공무원의 공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원으로 보고 있습니다(서울고법 1975. 7. 11. 선고, 75나425 판결). 이와 같이 해석하는 주된 원인은 공증인이 공증인법에 의하여 수행하는 공증업무가 국가 공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입니다.

-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변호사법에 의하여 공증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공증업무의 성격이 공증인이 수행하는 공증업무와 전혀 다르지 않으므로 공증업무를 수행하는 변호사를 국가배상법상 제2조의 공무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점은 공증인과 차이가 없습니다.

- 따라서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의 업무와 관련한 국가배상법의 적용여부는 공증인과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에 차이가 없습니다.

(3) 형법의 적용

① 뇌물죄

○ 형법상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명 받은 자에 한하지 않고 법령에 의하여 공무에 종사하는 자도 포함하는 바(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593 판결 참조), 공증인은 공증인법에 의하여,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변호사법에 의하여 국가의 업무로서 공무원이 분명한 공증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공증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 뇌물죄로 처벌받는 것은 현행법의 해석상 당연하고, 이러한 점은 공증인과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와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 이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자의 의견과 같이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배임수재죄(형법 제357조)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할 것인바, 양자간의 법정형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죄질이 동일한 이상 처단형의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 따라서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를 공증인과 형법상 뇌물죄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공증인법 제2조를 개정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② 업무상 비밀 누설죄

○ 형법 제317조는 업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공증인과 변호사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역시 공증인법 제2조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③ 감독 및 징계

○ 변호사법 제58조 제2항은 법무법인과 그 구성원의 공증에 관한 업무 및 그 감독과 징계에 관하여는 공증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공증인과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에 대한 감독 및 징계는 동일합니다.

○ 따라서 감독과 징계에 있어서 현행 법상 공증인과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간의 차이가 없습니다.

3. 결론

○ 현행법상 공증인이나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형법이나 국가배상법상 공무원보다 가벼운 책임을 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 공증업무와 관련된 법률규정이 미비하여 공증인이나 공증 담당 변호사가 공증사무를 무책임하게 수행하여 사회적 문제가 생기거나,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적도 없습니다.

○ 공증인과 변호사에게 보다 엄격한 책임을 지우고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발상은 결국 공증인의 업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서 공증제도가 갖고 있는 사회적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 결국 공증인법 일부개정안은 불필요한 것이고 제도적 규제의 철폐 및 완화라는 흐름에 반하는 것입니다.

● 정부 발의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협회 의견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정부가 2008년 11월 28일 국회에 ① 공증인 제도의 일원화, ② 공증인 정년제 도입, ③ 선서인증 및 전자공증제도 도입, ④ 대한공증협회 강제단체화 등을 주요 골자로 입법 제출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하여, 우리 협회는 2008년 12월 16일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 다 음 □

1. 개정안 제10조 제2항

- 각 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의 정수는 종전과 동일하게 임명공증인에 한하여야 합니다. 인가공증인의 정원까지 법무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38년의 역사를 지닌 변호사검업공증제도의 취지를 무너뜨리고, 기존 인가공증인의 기득권을 박탈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2. 개정안 제15조 제1항

- 공증인의 임기를 5년 임기제로 하고 재임명할 수 있다는 조항은 공증인의 직무적, 정치적 독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최근 대한공증협회가 한국을 대표하여 U.I.N.L(The International Union of Notaries, 국제공증협회) 회원국 가입을 추진중에 있는바, U.I.N.L. 회원가입 심사위원회(C.C.N.I.)으로부터 한국 공증인의 임기제는 공증인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회원국 가입을 위한 조건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공증인의 독립성을 해하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 공증제도의 국제적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 공증의 대외적 신뢰를 해하게 될 것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경우 통상 60세가 가까이 되어 임명되고, 70세 정년이 되면 퇴직하므로 임기제의 문제가 없으며, 중국도 특별한 임기제를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러한 규정이 국제적인 일반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재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또한 공증인 연임이 거부되었을 때 이에 대한 이의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보완규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동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개정안 제15조 제3항

- 우리나라 평균 수명은 80세가 넘어가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송무를 하지 않는 고령의 공증인들이 오히려 송무를 하는 젊은 공증인보다 훨씬 공증업무에 집중을 하고 있으며, 공증업무의 중요성과 전문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축적된 경험이나 지식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바, 직무수행의 적정성, 전문성 및 직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연령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할 것인바, 굳이 정년을 규정해야 한다면 최소한 80세 이상으로 정년을 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개정안 제15조의2 및 부칙 제8조

- 법무법인 등의 일반적 공증취급권을 없애고 법무부장관에게 선택적 인가권을 부여하는 규정으로 해석되고, 정원제와도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는바, 법무부장관에게 선택적인 인가권이냐 정원을 정할 권한을 부여한다면 그 기준이나 요건이 명확해야 할 것임에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어서 공증인가가 법무부장관의 자의에 따라 시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증인가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가기준과 요건에 관한 규정이 필요함입니다.

5. 개정안 제15조의4

-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의 연령을 75세까지로 제한하는 것(개정안 동조 제3항)은 위 3.의 이유와 같습니다.
- 특히 2005년 1월 27일 개정된 법률 제7357호 변호사법 부칙 제6조에 의하여 종전에 인가받은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공증인의 직무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부칙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특례 규정과 동 규정과의 관계에서 그 기득권을 대폭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한편, 사실상 고령의 변호사들이 많은 합동법률사무소는 연령제한을 이유로 조기에 공증인가 취소 또는 해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고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할 것입니다.

6. 개정안 제15조의8

- 인가공증인의 인가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재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위 2.의 이유 및 위 3.의 이유, 위 5.의 이유와 같고,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삭제해야 합니다.

7. 개정안 제33조 제3항

- 제1호는 참여인 결격자로서 미성년자를 들고 있는바, 행위무능력자를 참여인으로 할 수 없다는 취지여서 한정자산자와 금치산자도 참여인 결격자로 추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제6호는 참여인 결격자로서 공증인의 법정대리인을 들고 있으나 공증인에게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없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정대리인을 필요로 하는 행위무능력자는 공증인 결격사유입니다.

8. 개정안 제62조

- 개정안은 정관인증은 회사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이 취급하도록 하는 제62조를 삭제하였습니다. 위 제62조의 규정취지가 본디 회사의 정관은 이해관계인이 많은 매우 중요한 문서이므로 그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공증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었던바, 이러한 취지가 여전히 의미가 있음은 물론, 회사의 관리소홀로 정관을 분실하고 인증을 한 공증사무소에 관한 기록이 없어진 경우(소규모 회사의 경우 흔히 있는 일입니다)에 회사나 이해관계인이 그 회사의 정관을 인증한 공증

사무소를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점이 있어서 위 제62조를 존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9. 개정안 제77조의4 제1항

- 임원에 관하여 제1항 제4호는 50명 이내의 이사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77조의 6에서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는 이상 상임이사 이외의 별도의 이사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만일 50명 이내의 이사를 둔다면 이사회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운영위원회와 서로 옥상옥이어서 낭비입니다. 위 제4호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10. 개정안 제77조의5

- 제2항은 총회의 구성원으로 대의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총회의 구성원은 회원 전체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공증인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대의원을 선출할 필요가 없고 공증인이 직접 참석하여 결의하거나 서면결의 혹은 위임에 의한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경우 각 지방변호사회가 조직되어 있어서 지방변호사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증협회의 경우 지방회 조직되어 있지 않아서 대의원을 선출할 기관이 총회 이외에 달리 없고, 또한 관할 지방검찰청별로 지방회를 조직한다고 하더라도 소속회원이 지극히 소수여서 굳이 대의원을 선출할 필요성이 없는 지방회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11. 개정안 제77조의8 제3항 및 제77조의10 제2항, 제3항

- 공증협회와 공증인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국제적 기준에 맞는 것인지 숙고하고 재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이 규정은 U.I.N.L 가입과 관련하여 U.I.N.L측은 한국의 회원국 가입조건으로 위 2. 의 이유에서 설명한 것과 더불어 대한공증협회의 유일성, 강제성 및 독립성이 보장될 것을 조건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의 공증협회에 대한 감독은 공증협회와 공증업무의 적법성 확보 및 부실화 방지에 그쳐야 하고 산하기관화 하여 독립성을 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 ① 제77조의8 제3항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은 매년 1월 말일까지 전년도에 실시한 연수교육상황과 실적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정은 독립성이 없는 산하기관이나 타당한 규정으로서 삭제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특히 일정기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독립성을 현저히 해치는 규정입니다.
- ② 제77조의10 제2항에서 총회 결의를 법무부장관에게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와 같은 이유로 삭제하거나, 결의내용을 통

지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는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 ③ 제77조의10 제3항은 총회의 결의가 위법이면 법무부장관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역시 같은 이유로 삭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의내용이 위법이라면 당연히 무효이거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을 것이므로 법무부장관이 여기에 관여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대외적으로 독립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 구실이 될 것입니다.

12. 개정안 제82조 제2항

- 지방검찰청 검사장 및 대한공증협회의 장은 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정안 제78조의 감독권 위임의 경우나 강제가 입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징계개시 신청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야 합니다. 징계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하여 감독기관에 보고하는 데 그치는 것은 독립성이 전혀 없는 산하기관의 경우이나 타당한 규정입니다.

13. 개정안 제85조 제4항

- 징계위원은 모두 법무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고, 대한공증협회는 징계위원의 구성에 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바, 법률에 의하여 설립이 강제되고 공증인의 가입이 강제되는 대한공증협회가 회원들

의 실무와 실정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으므로 징계절차에 대한공증협회의 의견과 전문지식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한공증협회장이 추천하는 공증인”을 징계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14. 개정안 제89조

- 선서인증에 대한 벌칙으로 300만원의 벌금은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가법다 할 것이므로 벌칙 내용을 위증죄에 준하여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5. 개정안 부칙 제1조 단서

- 공증인의 연령제한은 위 3.의 이유와 위 5.의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활발히 활동중인 공증인의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가능한 공증인의 임기인 5년 후 정도부터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16. 개정안 부칙 제3조

- 위 5.의 이유와 같이 기존 공증인가 합동법률사무소에 대한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보완규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기존 법무법인 등도 인가 기간이 5년으로 한정되어 과거 영구적이던 기존의 공증인가가 제한을 받게 되는 기득권이 침해되는 불합리한 측면이 발생하게 된다 할 것입니다.

17. 개정안에 추가할 사항

- 공증업무 직역 확대를 위하여 이혼의

사확인의 인증, 등기원인증서의 인증, 특정물인도(명도 포함) 등에 관한 공정증서 작성 권한 등의 제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증업무 질의·회신

● 유언공정증서 원본 열람 관련(공증인 허만석)

▷ 질의내용

유언자인 부(父)가 본인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수증자를 장남으로 정하여 유언하고 그에 따라 유언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 유언자의 처(妻)나 유언자의 다른 직계비속이 공증인법 제43조[원본의 열람]의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어 위 유언공정증서 원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2008. 3. 13.)

-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들의 열람청구를 허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문제는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장래 상속인이 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유언자의 의사에 반하여 혹은 유언자가 모르는 틈에 열람청구를 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것인지 일 것입니다.
- 유언자의 유언의 내용에 따라 유언자의 처나 직계비속은 유언자가 사망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이나 유류분청구권의 범위가 달라지게 될 것이므로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그러나 공증인법 제43조가 규정하고 있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열

람청구를 할 당시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유언자의 처나 직계비속은 장차 유언자가 사망하면 그 때 비로소 상속인이 되어 유언자인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것이어서 유언자의 처나 직계비속은 유언자가 사망하기까지는 유언으로 인하여 장래 법률상 이해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언자는 자신의 유언 내용이 생전에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처나 직계비속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유언자의 의사에 합치되고, 유언 내용이 공개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가족들 간에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도 합니다.

- 따라서 유언자가 사망하기 전에 유언자의 처나 직계비속이 유언공정증서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 공증인법 제 43조의 법률상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약속어음 공증 관련(법무법인 일신)

▷ 질의내용

- ① 甲이 乙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乙이 이를 丙에게 배서양도하였다. 그 뒤 丙으로부터 乙이 이 어음을 돌려받아 甲에게 집행을 인락하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요구하여

乙에게 집행력을 부여하는 공정증서를 작성받았다. 그리고 乙이 이 어음을 다시 丙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丙이 배서를 받은 이후에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더라도 丙이 이 어음을 가지고 甲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 ② 위와 같이 丙이 양수한 어음을 丙이 소지인으로써 甲에게 집행을 인락하는 공정증서의 작성을 요구하여 丙에게 집행력을 부여하는 공정증서를 작성받아 丙이 그 丙의 배서를 말소하고 이를 다시 乙에게 넘겨주었을 경우에 乙이 이 어음을 가지고 甲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2008. 7. 24.)

- 어음은 유가증권입니다. 유가증권은 원칙적으로 양도성을 지닙니다. 배서라는 간편한 방법으로 양도할 수 있습니다. 어음채권자가 어음채무자에게 요구하여 어음채무자로부터 공정증서를 작성받는 것은 한편으로는 채권자 자신이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것이고, 나아가 또 한편으로는 채권자가 제 3자와의 거래관계에서 그 거래관계의 지급수단으로 집행력을 지닌 어음을 양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력을 지니지 않는 어음보다 집행력을 지닌 어음이 지급수단으로 이용가치가 높습니다.
- 위와 같은 어음의 양도성, 공증어음의 이용도 등에 비추어 볼 때,

㉔ 질의 1의 경우 丙이 배서양도받은 이후에 甲으로부터 乙에게 집행력을 부여하는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더라도 丙이 약속어음의 양수인으로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㉕ 질의 2의 경우 甲으로부터 丙에게 집행력을 부여하는 공정증서가 작성된 이후에 丙이 그 배서를 말소하고 乙에게 돌려주었으면 乙은 甲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풀이합니다.

○ 위 ㉔의 경우 어음상에 丙앞으로 배서가 된 어음에 甲이 집행력을 부여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은 乙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丙으로 하여금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㉕의 경우 丙이 그 배서를 말소하는 대신 乙에게 배서하여 주면 乙이 당연히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터이므로 그 배서를 말소하고 돌려주었다라도 乙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고 풀이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㉔, ㉕의 경우 모두 甲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甲이 乙, 丙만에 한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❶ 다수의 수취인으로 작성된 약속어음 공정증서 집행문 부여 관련(법무법인 부천종합)

▷ 질의내용

채권자(수취인)을 3인으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후 발행인이 지급기일을 지체하자, 채권자(수취인) 1인이 공정증서 정본에 집행문을 신청한 경우 ① 채권자 1인에게 채권액을 지분을 지정하여 집행문을 부여해야 하는지, ② 채권자 1인에게 지분 지정 없이 집행문을 부여해도 되는지 여부

▶ 회신(2008. 8. 21.)

○ 어음상 복수의 수취인을 중첩적으로 기재한 경우 이들은 공동수취인이 되는데, 어음금의 지급을 구함에 있어서 공동수취인 중 1인이 현실적으로 어음을 소지하고 있는 1인이 전원을 위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고, 어음채무자도 그 1인에게 어음과 상환으로 어음금을 지급하면 전원에게 변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취인중 1인이 집행문 부여를 신청할 때에 공증인은 이를 부여해줄 수 있습니다.

2008년도 협회 주요 회무

(2008. 1. 1. ~ 12. 31.)

○ 2008. 1. 7. 이자제한법 시행 관련 업무 협조 안내

○ 2008. 1. 11. 2007년도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 의결사항 : 2008년도 정기총회 개최

○ 2008. 1. 18. 2007년도 제7차 집행부 회의 개최

▶ 논의사항 : 2008년도 정기총회 개최 논의

○ 2008. 1. 21. 2008년도 정기총회 개최

▶ 의결사항 : ① 2007년도 일반·기금특별회계 결산 승인 ② 2008년도 일반·기금특별회계 예산 승인 ③ 임원 및 운영위원회 선출직 위원 선출

▶ 선출 임원 :

협 회 장 노승행(법인 두레)
부협회장 유경희(법인 광장)
부협회장 손제복(법인 우리들)
부협회장 문형철(호남합동)
부협회장 김종환(대전종합법인)
총무이사 안원모(법인 한길)
재무이사 이봉상(법인 화우)
법제이사 나세근(일신법인)
섭외이사 박광빈(법인 율촌)
회원이사 남상우(안산제일공증인)
감 사 이용식(법인 삼풍)
감 사 이일영(법인 일원)

▶ 선출 운영위원 :

조희중(법인 서부종합)

장재형(법인 서울제일)

이주성(법인 화우)

○ 2008. 2. 15. 2008년도 제1차 집행부 회의 개최

▶ 논의사항 : ① 상견례 및 업무보고 ② 회원 질의·회신 검토 ③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논의 ④ 기타 보고사항

○ 2008. 3. 3. 2008년도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 의결사항 : ① 위원장 호선 및 간사 지명 ② 임원(부협회장 및 이사) 선임 승인 ③ 위원회 위원 지명 승인 ④ 기타 보고사항

○ 2008. 3. 10. 제2차 집행부 회의 개최

▶ 논의사항 : ① 상법상 정관 및 의사록 인증면제 추진 관련 논의 ② 회원 질의·회신 검토 ③ 홈페이지 리뉴얼 논의 ④ 기타 보고사항

○ 2008. 3. 13. 공증인 허만석(유언공정증서 원본 열람 관련) 질의 회신

○ 2008. 3. 14. 대한법조원로회의측 공증인법 개정안 가운데 정년제 도입 철회 관련 의견서 법무부 전달

○ 2008. 3. 14. 협회 공증제도개선위원회 및 공증사무지도위원회 위원 위촉

▶ 공증제도개선위원 : 김종철(일신법인)·김진열(법인 서부종합)·박연철(법인 정평)·안원모(법인 한길)·이

- 준(법인 태평양) · 정주식(법인 우인) · 정해덕(법인 화우) · 차재일(서울종합 법인) · 최중현(법인 효원) · 홍영균(법인 한강) 변호사
- ▶ 공증사무지도위원 : 고영준(제일종합법인) · 김양남(여의도합동) · 김영삼(평택 법인) · 민수명(법인 태안) · 심재돈(법인 대륙) · 심창섭(법인 케이씨엘) · 유경희(법인 광장) · 이석우(법인 두레) · 이윤복(한일합동) · 임채균(법인 자하연) 변호사
- 2008. 3. 14. 법무부의 공증담당변호사 서명 등 신고 관련 업무 협조 안내
- 2008. 4. 1. 상법상 정관 및 의사록인 증 관련 각국의 법제비교 연구용역 의뢰
- 2008. 4. 10. 법무부 공증서비스개선 소위원회 위원(안원모 총무이사, 남상우 회원이사) 추천
- 2008. 4. 21. 중국 대련시공증원협회 방문 및 교류회 진행
- 2008. 5. 13. 제3차 집행부 회의 개최
 - ▶ 논의사항 : ① 상법상 정관 및 의사록 인증면제 추진 관련 논의 ② 회원 질의 · 회신 검토 ③ 기타 보고사항
- 2008. 5. 15. 상법상 정관 및 의사록인 증 관련 회원 의견 수렴
- 2008. 5. 19.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 ▶ 논의사항 : ①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한 상법 및 공증인법 개정안 관련 보고 및 논의 ② 기타 보고사항
- 2008. 5. 21. 창업절차 간소화를 위한 상법 및 공증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법무부에 제시
- 2008. 6. 10. 법무부 공증 관련 지시 및 공증서류 검열시 주요 지적사항 안내
- 2008. 6. 10. 2008년도 연회비 납부 안내
- 2008. 7. 21. 제4차 집행부 회의 개최
 - ▶ 논의사항 : ① 제2회 공증주간 행사 논의 ② 전자공증제도 도입 전자문서보관시스템 회원 부담 설치 관련 논의 ③ 협회 사무국 추가 임대 및 인테리어 논의 ④ 회원 질의 · 회신 검토 ⑤ 기타 보고사항
- 2008. 7. 24. 법무법인 일신(약속어음 공증 관련) 질의 회신
- 2008. 8. 20. 서울지방변호사회 403호 협회 사무국으로 추가 임대(전세, 1년간)
- 2008. 8. 21. 제5차 집행부 회의 개최
 - ▶ 논의사항 : ① 제2회 공증주간 행사 논의 ② 협회 사무국 추가 임대 및 인테리어 논의 ③ 회원 질의 · 회신 검토 ④ 기타 보고사항

- 2008. 8. 21.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실
조회 회신
- 2008. 8. 21. 법무법인 부천종합법을
사무소(다수의 수취인으로 작성된 약속
어음 공정증서의 집행문 부여 관련) 질
의 회신
- 2008. 9. 2.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 논의사항 : ① 제2회 공증주간 행사 개
최 보고 및 논의 ② 공증인법 개정안 경
과 보고 및 논의 ③ 협회 사무구 추가
임대 보고 및 논의 ④ 기타 보고사항
- 2008. 9. 22. 제2회 공증주간 선포식
및 공증강연회 개최
- 2008. 9. 24.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
법 시행 관련 공정증서 작성 문구에 대
한 법무부 지침 요청
- 2008. 10. 1. 2009년도 공증부책 일괄
제작·공급 신청 안내
- 2008. 10. 1.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
법 시행 관련 법무부 업무 지시사항 안
내
- 2008. 10. 6.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
법 시행 관련 공정증서 작성 법무부 추
가 지침 요청
- 2008. 10. 8. 제6차 집행부 회의 개최
▶ 논의사항 : ① 협회 사무국 인테리어

- 논의 ② 회원 질의·회신 검토 ③ 2009
년도 대한공증협회지 발간 논의 ④ 기
타 보고사항
- 2008. 10. 9. 보증인보호를 위한 특별
법 시행 관련 공정증서 작성 법무부 추
가 지침 안내
- 2008. 12. 10. 제7차 집행부 회의 개최
▶ 논의사항 : ① 공증인법 개정안 논의 ②
회원 질의·회신 검토 ③ 2009년도 대
한공증협회지 발간 논의 ④ 2009년도
정기총회 개최 논의 ⑤ 기타 보고사항
- 2008. 12. 16. 서울가정법원 사실조회
회신
- 2008. 12. 16. 공증인법 일부개정법을
안(정부 발의 의안번호 제2392호)에 대
한 의견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출
- 2008. 12. 22. 제4차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 의결사항 : 2009년도 정기총회 개최 논의
▶ 보고사항 : ① 공증인법 개정안 관련 보
고 ② 협회 사무국 인테리어 보고 ③
U.I.N.L. 회원국 가입 관련 진행상황 보
고 ④ 기타 보고사항
- 2008. 12. 23. 대한법조원로회의측 공
증인법 개정안 가운데 정년제 도입 철회
관련 의견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달

2008년도 회원 입회·탈회 현황

(2008. 1. 1. ~ 12. 31.)

○ 입회 현황 ○

❖ 법무법인 우원

- 인가일 : 2007. 12. 14.
- 대 표 : 정원기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5-13
영일빌딩 지하2층 (137-070)
- 전 화 : 02-536-0500
- 팩 스 : 02-537-0292
- 입회일 : 2008. 1. 2.

❖ 법무법인 백범

- 인가일 : 2007. 12. 26.
- 대 표 : 채희철 변호사
- 소재지 : 인천 남구 학익1동 252-9
중앙법조빌딩 1층 (402-865)
- 전 화 : 032-873-6300
- 팩 스 : 032-873-6555
- 입회일 : 2008. 1. 3.

❖ 법무법인 태승

- 인가일 : 2007. 8. 9.
- 대 표 : 임호범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3-10
로이어즈타워 3층, 14층
(137-874)
- 전 화 : 02-525-5400
- 팩 스 : 02-525-7878
- 입회일 : 2008. 1. 9.

❖ 법무법인 한결

- 인가일 : 2000. 9. 30.
- 대 표 : 박성민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33
태해란빌딩 7층 (135-080)
- 전 화 : 02-3458-0960
- 팩 스 : 02-3487-3811
- 입회일 : 2008. 1. 9.

❖ 법무법인 하이뷰

- 인가일 : 2008. 1. 7.
- 대 표 : 문재근 · 방옥성 변호사
- 소재지 : 경기 파주시 금촌동 952-1, 2
경기빌딩 2층 (413-826)
- 전 화 : 031-943-2292
- 팩 스 : 031-943-7110
- 입회일 : 2008. 1. 11.

❖ 법무법인 태일

- 인가일 : 2008. 1. 23.
- 대 표 : 이상섭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9-3
태흥빌딩 3~5층 (137-885)
- 전 화 : 02-592-1600
- 팩 스 : 02-592-7800
- 입회일 : 2008. 2. 1.

❖ 공증인 김주학 사무소-소속 서울중앙지검

- 임명일 : 2008. 1. 9.(임기 5년)
- 소재지 : 서울 중구 서소문동 85-3
알리안츠제일생명보험빌딩 5층
(100-814)
- 전 화 : 02-776-5709, 776-6739
- 팩 스 : 02-773-0121
- 입회일 : 2008. 2. 28.

❖ 법무법인 상선

- 인가일 : 2008. 2. 11.
- 대 표 : 손성현 · 김종욱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1-14
우성빌딩 1층 (137-874)
- 전 화 : 02-597-0170
- 팩 스 : 02-597-0174
- 입회일 : 2008. 2. 28.

❖ 공증인 이병렬 사무소 - 소속 의정부지점

- 임명일 : 2008. 1. 9.(임기 5년)
- 소재지 :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363-1
법전빌딩 506호 (480-808)
- 전 화 : 031-875-8700
- 팩 스 : 031-875-8707
- 입회일 : 2008. 3. 3.

❖ 법무법인 지산

- 인가일 : 2008. 3. 6.
- 대 표 : 김영권 · 심재훈 변호사
- 소재지 : 광주 서구 치평동 1310-22
지산빌딩 1층 (502-828)
- 전 화 : 062-385-6300
- 팩 스 : 062-385-6303
- 입회일 : 2008. 3. 6.

❖ 법무법인 렉스

- 인가일 : 2008. 3. 25.
- 대 표 : 김동윤 · 우의형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3-5
오피런스빌딩 15층 (137-873)
- 전 화 : 02-6360-5181
- 팩 스 : 02-6360-5196
- 입회일 : 2008. 3. 27.

❖ 법무법인 마당

- 인가일 : 2008. 3. 5.
- 대 표 : 이재철 · 임한흠 변호사
- 소재지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9-1 샤르망2 오피스텔
304호 (431-060)
- 전 화 : 031-476-1000
- 팩 스 : 031-476-5700
- 입회일 : 2008. 4. 1.

❖ 법무법인 청주로

- 인가일 : 2008. 3. 28.
- 대 표 : 유재풍 변호사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657
엔젤빌딩 7층 (361-160)
- 전 화 : 043-290-4040
- 팩 스 : 043-290-4070
- 입회일 : 2008. 4. 1.

❖ 법무법인 삼원

- 인가일 : 2008. 3. 31.
- 대 표 : 이창학 변호사
- 소재지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
중앙법조빌딩 1~3층 (425-807)
- 전 화 : 031-486-9700
- 팩 스 : 031-439-0028
- 입회일 : 2008. 4. 2.

❖ 법무법인 한덕

- 인가일 : 2008. 5. 16.
- 대 표 : 전창열 · 채방은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6-8
국제빌딩 3층 (137-885)
- 전 화 : 02-532-9922
- 팩 스 : 02-3482-6331

- 입회일 : 2008. 6. 3.

❖ 법무법인 정맥

- 인가일 : 2008. 4. 1.
- 대 표 : 김 막 변호사
- 소재지 :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7-1
로원타워 2층, 3층 (611-731)
- 전 화 : 051-507-7477
- 팩 스 : 051-507-9918
- 입회일 : 2008. 7. 1.

❖ 법무법인 다운

- 인가일 : 2007. 12. 14.
- 대 표 : 이면재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8-13
동우빌딩 2층 (137-883)
- 전 화 : 02-533-5533
- 팩 스 : 02-533-1269
- 입회일 : 2008. 7. 2.

❖ 법무법인 호수

- 인가일 : 2008. 5. 6.
- 대 표 : 김익성 · 안희권 변호사
- 소재지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1-4 보림빌딩 4층 (410-837)
- 전 화 : 031-932-3025~6
- 팩 스 : 031-932-3028
- 입회일 : 2008. 7. 2.

❖ 법무법인 세동

- 인가일 : 2008. 5. 20.
- 대 표 : 임주현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1052-40
위너빌 4층 (150-825)
- 전 화 : 02-3486-1882

- 팩 스 : 02-3486-1887

- 입회일 : 2008. 7. 8.

❖ 법무법인 명장

- 인가일 : 2008. 7. 21.
- 대 표 : 김영길 · 오규섭 변호사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591
원흥빌딩 4층 (361-836)
- 전 화 : 043-284-6006
- 팩 스 : 043-287-8844
- 입회일 : 2008. 7. 23.

❖ 법무법인 새서울

- 인가일 : 2008. 7. 16.
- 대 표 : 윤영근 · 김종철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5-13
영일빌딩 5층 (137-881)
- 전 화 : 02-581-0095
- 팩 스 : 02-581-0087
- 입회일 : 2008. 8. 27.

❖ 법무법인 안양

- 인가일 : 2008. 8. 26.
- 대 표 : 이승채 변호사
- 소재지 : 경기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한양월드빌 206, 207호
(431-817)
- 전 화 : 031-387-8000
- 팩 스 : 031-387-5409
- 입회일 : 2008. 8. 29.

❖ 공증인 정기호 사무소 - 소속 청주지검

- 임명일 : 2008. 2. 11.(임기 5년)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5-2 (361-160)

· 전 화 : 043-223-1706

· 팩 스 : 043-253-1717

· 입회일 : 2008. 9. 16.

❖ 신아 법무법인

· 인가일 : 2008. 9. 29.

· 대 표 : 서우원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38-23
클리포드빌딩 2층, 3층
(137-860)

· 전 화 : 02-523-0008

· 팩 스 : 02-535-9939

· 입회일 : 2008. 10. 2.

❖ 법무법인 지평지성

· 인가일 : 2008. 9. 18.

· 대 표 : 조용환 · 박동영 ·
양영태 · 강성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11층
(100-743)

· 전 화 : 02-6050-0700~1

· 팩 스 : 02-6050-1709

· 입회일 : 2008. 10. 6.

❖ 운산 법무법인

· 인가일 : 2008. 10. 28.

· 대 표 : 김수철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11
정곡빌딩 남관 102호 (137-731)

· 전 화 : 02-534-1208

· 팩 스 : 02-3477-5480

· 입회일 : 2008. 11. 4.

❖ 법무법인 우면

· 인가일 : 2008. 10. 28.

· 대 표 : 남기정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23-12
블루타워 5층 (137-070)

· 전 화 : 02-587-9200

· 팩 스 : 02-587-9211

· 입회일 : 2008. 11. 7.

❖ 법무법인 동행

· 인가일 : 2008. 11. 17.

· 대 표 : 김성환 · 정선명 변호사

· 소재지 : 울산 남구 옥동 581-2
거화법률빌딩 3층, 4층
(611-731)

· 전 화 : 052-261-2288

· 팩 스 : 052-258-8773

· 입회일 : 2008. 11. 19.

❖ 법무법인 정건

· 인가일 : 2008. 11. 26.

· 대 표 : 김경희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95-1
청향빌딩 4층 (137-883)

· 전 화 : 02-537-9024

· 팩 스 : 02-537-9057

· 입회일 : 2008. 11. 27.

❖ 법무법인 솔론

· 인가일 : 2008. 12. 15.

· 대 표 : 김종수 · 하인수 변호사

· 소재지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
798 우리은행빌딩 3층
(410-811)

· 전 화 : 031-903-9988

· 팩 스 : 031-903-9008

· 입회일 : 2008. 12. 17.

❖ 공증인 심학무 사무소 - 소속 의정부지검

· 임명일 : 2008. 6. 5.(임기 5년)

· 소재지 : 경기 남양주시 지금동 99-23
미금농협도농지점 4층
(472-933)

· 전 화 : 031-556-0330

· 팩 스 : 031-556-0990

· 입회일 : 2008. 12. 29.

○ 탈회 현황 ○

❖ 법무법인 해미르

· 대 표 : 서 현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20-2
한국사학진흥재단빌딩 2층

· 탈회일 : 2008. 1. 2.

❖ 법무법인 아성법률사무소

· 대 표 : 서한규 변호사

· 소재지 : 경북 구미시 송정동 459-9
춘양당빌딩 5층

· 탈회일 : 2008. 1. 3.

❖ 법무법인 세진종합법률사무소

· 대 표 : 이병렬 · 민홍기 변호사

· 소재지 :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363-1
법전빌딩 506호

· 탈회일 : 2008. 3. 3.

❖ 공증인가 청주합동법률사무소

· 대 표 : 민석기 변호사

· 소재지 : 충북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1가

15-2번지

· 탈회일 : 2008. 3. 25.

❖ 법무법인 새벽

· 대 표 : 노현준 · 이현욱 · 최원 변호사

· 소재지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 중앙법조빌딩 1층, 2층

· 탈회일 : 2008. 3. 28.

❖ 법무법인 가람

· 대 표 : 최거훈 · 이점인 변호사

· 소재지 : 부산 연제구 거제1동 1497-1
로원타워빌딩 302호

· 탈회일 : 2008. 3. 31.

❖ 법무법인 태백

· 대 표 : 백석기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0-8
신성빌딩 401호

· 탈회일 : 2008. 5. 30.

❖ 법무법인 새날

· 대 표 : 심학무 변호사

· 소재지 : 경기 남양주시 지금동 99-23
미금농협도농지점 4층

· 탈회일 : 2008. 6. 4.

❖ 공증인가 새서울합동법률사무소

· 대 표 : 윤영근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675-13
영일빌딩 5층

· 탈회일 : 2008. 6. 18.

❖ 공증인가 전북합동법률사무소

· 대 표 : 신현정 변호사

- 소재지 : 전북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1가
34-2 삼광빌딩 3~4층

· 탈회일 : 2008. 8. 7.

◆ 공증인 김종숙

- 소 속 : 대구지검
- 소재지 : 대구 중구 삼덕1가 64-13
- 탈회일 : 2008. 8. 18.

◆ 법무법인 지성

- 대 표 : 강성 · 주완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역삼동 646
현대해상화재보험빌딩 14층
- 탈회일 : 2008. 9. 18.

◆ 법무법인 지평

- 대 표 : 조용환 변호사
- 소재지 : 서울 중구 남대문로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11층
- 탈회일 : 2008. 9. 18.

대한공증협회지

<2009 통권 제2호>

발행일 : 2009년 1월 19일

발행인 : 노 승 행

편집인 : 안 원 모

발행처 : 대한공증협회

서울 서초구 서초3동 1718-1 (변호사회관 404호)

전화 (02)3477-5007 팩스 (02)3476-5551

<http://www.koreanotary.or.kr>

E-mail : kna@koreanotary.or.kr

제 작 : 디자인수 (1566-5790)

The Journal of Korean Notaries Association

Volume. 2 2009

Published Jan 19, 2009

Publisher RHO, Seung-Haeng

Editor AHN, Won-Mo

Published by Korean Notaries Association

Address #404, 1718-1, Seocho3-dong, Seocho-gu,
SEOUL, KOREA

(Tel : +82-2-3477-5007 Fax : +82-2-3476-5551)